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, 6556 / 전송 (02)731-6562
 처리부서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3층) / 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이순재

문서번호 법무11110-423
 시행일자 1999. 11. 9. ()
 (경유) (제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보존기간		시	장
공개여부			
가담현황	전 결	2002	결재 1999. 11. 08 기획예산실장
법무담당관	박동봉	◎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	
기안자	이순재		협조
심사자		심사일	

제목 후생시설운영규정증개정규정 발령

1.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- 가. 발령예정일 : '99. 11. 10 (수)
- 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령 제907호

훈령 999 호

- 붙임 : 1. 발령목록 1부.
- 2. 발령안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발령예정일 : '99. 11. 10 (수)
- 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7호

- 붙임 : 1. 발명목록 1부.
2. 발명안 각2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(제3안)

수신 : 주택기획과장

제목 : 혼명 발명 통보

1.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증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8조에 의거 시보에 게재하여 발명등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발명에정일 : '99. 11. 10 (수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혼명 제907호

붙임 : 발명목록 각1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

훈령 발령 목록

□ 총 1 건 (개정)

연 번	법 규 명	번호	주관부서
1	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	제907호	인사 행정 과

01월본대조필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
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9년 11월 15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인문대조필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우리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부서와 직위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명칭으로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, 상임위원 및 간사의 직위명칭을 변경된 직위로 개정(안 제5조 및 제8조)

(1) 위 원 장 : 총무과장 → 인사행정과장

(2) 상임위원 : 총무과 서무계장 → 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

(3) 간 사 : 매점운영책임관 → 후생시설운영팀장

기억에산실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훈령 제 907 호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인사행정과장”으로, “총무과 서무계장”을 “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”으로, “본청 계장”을 “본청 소속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간사 1인율”을 “간사률”로, “매점운영책임관”을 “후생시설운영팀장”으로, 제2항 중 “총무과”를 “인사행정과”로 한다.

기획예산담당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●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 [1996. 6. 25. 훈령제940호]</p> <p>제5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<u>총무과장</u>이 되고, 상임위원은 <u>총무과 서무계장</u>이 되며, 위원은 <u>본청계장</u> 및 <u>각실과 서무담당 중(기능직 1명, 여직원 1명이상포함)</u>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제8조(간사) ① 운영위원회는 <u>간사 1인</u>을 두며, 간사는 <u>매점운영책임관</u>이 된다 ② 간사는 <u>총무과 소속 6~7급 공무원</u>중 위원장이 지정한다.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u>인사행정과장</u> 인 <u>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</u> 본청 소속 <u>사무관</u></p> <p>제8조(간사) ① <u>간사</u> <u>후생시설운영팀장</u> ② <u>인사행정과</u> ③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

우 100-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/ 전화(02)3707-8081 ~2 / 전송(02)3707-8199
 처리부서 : 인사행정과(연급매접) 과장 국윤호 / 팀장 김종구 / 담당 김용홍

문서번호 인사 11250-7625

시행일자 1999. 10.

경유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선 람 접	일자	99. 10. 29	지 시 결 재 · 공 람		
	시간				
수	번호	16기			
	처리과				
	담당자				
	심사자		심사일	'99. 10.	

제목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개정(안) 발령 의뢰

서울특별시 후생시설 운영규정을 별첨 개정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발령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개정규정안 1부. 끝.

인 사 행 정 과 장

서울특별시직원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우리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부서와 직위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명칭으로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, 상임위원 및 간사의 직위명칭을 변경된 직위로 개정(안 제5조 및 제8조)

(1) 위 원 장 : 총무과장 → 인사행정과장

(2) 상임위원 : 총무과 서무계장 → 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

(3) 간 사 : 매점운영책임관 → 후생시설운영팀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인사행정과장”으로, “총무과 서무계장”을 “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”으로, “본청 계장”을 “본청 소속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간사 1인율”을 “간사률”로, “매점운영책임관”을 “후생시설운영팀장”으로, 제2항 중 “총무과”를 “인사행정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계	정	안
<p>● 서울특별신후생시설운영규정 [1996. 6. 25. 훈령제940호]</p> <p>제5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, 상임위원은 총무과 서무계장이 되며, 위원은 본청계장 및 각실과 서무담당 중(기능직 1명, 여직원 1명이상포함) 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제8조(간사) ① 운영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매전운영책임관이 된다 ② 간사는 총무과 소속 6~7급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정한다.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	<p>제5조(구성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인사행정과장 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 본청 소속 사무관</p> <p>제8조(간사) ① 간사들 후생시설운영팀장 ② 인사행정과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	

서울특별시

우 100-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/ 전화 (02) 3707-8081 / 전송 (02) 3707-8199
 처리부서 : 인사행정과(시정본관4층), 과장 국윤호, 담당사무관 김종구, 담당 지종천

문서번호 인사11250-

시행일자 1999. 1.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
참소

취급		시 장
보존		
행정관리국상	전결	김종구
인사행정과장	국윤호	법무담당관 김사필 담당사무관 김종구
기안	지종천	협조

세 목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개정

1. 우리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위원의 부서와 직원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·보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후생시설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첨 부 : 1.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개정규정안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: 법무담당관

세 목 :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개정(인) 발령의뢰

서울특별시 후생시설 운영규정을 별첨 개정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발령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개정규정안 1부. 끝.

인 사 행 정 과 장

서울특별시직원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

제 2 호	제 2 호	제 2 호
담당자	검토인사담당관	검토인사담당관
인광명	김영	박동봉

1. 개정이유

우리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부서와 직위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된 명칭으로 정비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서울특별시후생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, 상임위원 및 간사의 직위명칭을 변경된 직위로 개정(안 제5조 및 제8조)

(1) 위 원 장 : 총무과장 → 인사행정과장

(2) 상임위원 : 총무과 서무계장 → 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

(3) 간 사 : 매점운영책임관 → 후생시설운영팀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근로기준법 및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 첨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총무과장” 을 “인사행정과장”으로, “총무과 서무계장”을 “인사행정과 후생복무담당사무관”으로, “본청 계장”을 “본청소속 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항중 “간사 1인을”을 “간사를”로, “매점운영책임관”을 “후생시설운영팀장”으로, 제2항 중 “총무과”를 “인사행정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● 서울특별시후생시설운영규정 (1996. 6.25. 훈령 제940호)</p> <p>제5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(2)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, 상임위원은 총무과 서무계장이 되며, 위원은 <u>본청계장</u> 및 각실과 서무담당 중(기능직1명, 여직원1명 이상 포함)위원장이 위촉한다.</p> <p>제8조(간사)①운영위원회는 <u>간사 1인</u>을 두며,간사는 <u>매점운영책임관</u>이 된다.</p> <p>(2)간사는 총무과 소속 6~7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(3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u>인사행정과장</u> <u>인사행정과 후생부무담당사무관</u> <u>본청소속 사무관</u></p> <p>.....</p> <p>제8조(간사)① <u>간사</u>를 <u>후생시설운영팀장</u></p> <p>② <u>인사행정과</u></p> <p>.....</p> <p>③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